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훈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도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‘배우자 출산휴가’가 ‘배우자 출산전후휴가’로 제도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(최초 3일)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생 후 육아휴직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등의

특례에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추가(안 제95조의3제2항)

나. ‘배우자 출산휴가’와 ‘배우자 출산휴가 급여’ 명칭을 ‘배우자 출산전후휴

가’와 ‘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’로 하위법령 내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

(안 제100조, 안 제101조, 안 제104조)

다.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 신청기간 연

장 사유, 상·하한액 및 감액 근거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함(안 제100조, 안

제101조, 안 제104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육아휴직을”을 “육아휴직을 하거나, 남성 근로자가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”로, “여성 근로자와”를 “여성과”로 한다.

제100조 중 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”를 “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,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급여”로 한다.

제101조제2호 중 “배우자 출산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 또는”을 “배우자 출산전후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전후휴가”라 한다),”로, “한다)의”를 “한다)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(이하 “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”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104조 본문 중 “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”을 “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,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5조의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) ① (생 략)	제95조의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<u>육아휴직을</u>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, 임신 중인 <u>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</u> 를 부모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 <u>육아휴직을</u> 하거나, 남성 근로자가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<u>육아휴직을</u> ----- ----- ----- <u>여성과</u> ----- -----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
제100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 법 제75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, 유산·사산 휴가 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(이하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이라 한다)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.	제100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 <u>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,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급여</u> ----- ----- ----- --.			
제101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	제101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			

상·하한액)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하한액 :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(이하 “시간급 최저임금액”이라 한다)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

제104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

상·하한액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배우자 출산전후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전후휴가”라 한다), -----

-----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(이하 “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”라 한다)의-----

제104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) -----

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
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
가 출산전후휴가 기간, 유산·
사산 휴가 기간, 배우자 출산휴
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
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
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
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
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
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
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
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
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
고 지급한다. 다만, 휴가기간 중
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
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
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
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
다.

----- 배우자 출산전
후휴가 기간, 난임치료휴가 기
간 또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
기간 -----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76